

● 제327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2. 19.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I. 결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송경택 의원 1인발의(31명 찬성)
- 나. 제안일 : 2024. 10. 16.
- 다. 회부일 : 2024. 10. 18.
- 라. 의안번호 : 220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988년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유일무이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알리며 국제적 위상을 크게 강화한 계기가 되었음.
- 그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지금 서울시는 다시 한번 48년 만의 올림픽 개최를 추진하며, 오세훈 시장은 “100% 흑자 올림픽”, “저탄소 친환경 올림픽”을 목표로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의사를 밝혔음.
-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에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기존 시설 재활용과 함께 친환경 기조에 맞는 도시 재개발과 인프라 개선도 중요하며, 또한 올림픽 개최가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시민들의 인식과 공감, 지지를 얻는 노력이 필요함.

-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관련 정책을 점검·발굴하고,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으며, 시민적 공감과 지지를 모으는 범 상임위원회 차원의 활동을 펼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2036년 서울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성공적인 전략을 검토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유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서울특별시는 2022년 10월에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의사를 표명하고, 2024년 11월에는 대한체육회에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 도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함.
 -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한국에서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 도시 유치를 신청함.
 - 서울시는 관광체육국 내 올림픽추진팀(1팀, 3명)을 신설(2024.7.)하고, 올림픽 국내 개최 도시 유치 신청서 제출 등 올림픽 유치를 준비함.¹⁾
- 2021년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는 올림픽 운동의 로드맵으로 ‘올림픽 어젠다 2020+5’를 공개함.²⁾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5개 주요 핵심 트렌드로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디지털 혁신, ▲조직과 기관에 대한 신뢰, ▲코로나-19 이후 재정적 회복력을 강조하고, 이를 기반으로 15개 권고안을 제시함.

1) 2024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림픽 관련 부서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유치 노력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을 건의한 바 있음(2024.12.19.).

2) 코로나-19 팬데믹과 이후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올림픽 어젠다 2020을 확장·심화하여 올림픽 어젠다 2020+5를 수립함.(IOC 공식 홈페이지 <https://olympics.com/ioc/olympic-agenda-2020-plus-5>)

※ 올림픽 어젠다 2020+5의 15개 권고안

1. 올림픽 대회의 보편성과 특별함 강화
2. 지속가능한 올림픽 대회 조성
3. 선수 권리 및 책임 강화
4. 우수한 선수들 지속 육성
5. 안전한 스포츠 환경 구축 및 깨끗한 선수 보호 강화
6. 올림픽을 향한 여정의 가치 향상 및 촉진
7. 다른 스포츠 이벤트와 올림픽대회의 조화로운 일정 조정
8. 사람들의 디지털 참여 확대
9. 가상스포츠의 개발을 권장하고 더 나아가 비디오 게임 커뮤니티와 협력 추진
10.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중요한 요소로서 스포츠의 역할 강화
11. 난민에 대한 지원 강화
12. 올림픽 커뮤니티 너머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와 상호작용
13. 기업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인도
14. 굿 거버넌스를 통한 올림픽 무브먼트 강화
15. 수익 창출 모델의 혁신화

- 올림픽 주요 트렌드 중 최근 올림픽이 강조하는 지속가능성은 올림픽 개최를 단기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유산(Legacy)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서울시는 1988년 올림픽 개최 경험과 선진적인 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2036년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함.³⁾
- 또한 팬데믹 이후 강조되는 주요 트렌드 중 하나인 사회 내외부의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올림픽이 국가와 문화를 초월하여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연대와 협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과 국가의 지지가 필요함.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22년과 2024년에 ‘2036년 서울 올림픽

3) “88 서울올림픽 성과 재조명을 통해 2036 서울올림픽 유치 기원”,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24.11.21.

유치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서울시민은 전반적으로 서울 올림픽 개최 도전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음. 한편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음.

- 서울시민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두 차례의 올림픽 유치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8%(2022년)⁴⁾, 85.3%(2024년)⁵⁾가 서울의 올림픽 개최 도전에 대해 긍정적(매우 긍정적, 긍정적인 편 포함)으로 응답함.
- 서울시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대한민국의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 지원 및 중앙-지방 간 협력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며, 정부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음(2024.11.28.).
- 한편 올림픽 어젠다 2020+5의 권고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올림픽은 경제·사회·문화·정치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임. 이에 따라 개최 시 교통, 문화·관광, 보건, 환경, 도시계획, 안전, 재정, 미디어,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됨.
- 이와 같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036년 서울 하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민관 협력과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서울시의회 차원의 유치지원체계를 구축·가동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과 취지는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올림픽은 범세계적·범문화적 행사로, 유치 비전에 입각하여 서울시 관광체육국 올림픽추진팀을 중심으로 여러 실·국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을 고려했을 때, 특별위원회 구성요건⁶⁾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4) “서울시, 2036 올림픽 단독 개최 추진... 시민 72% 재유치 동의”, 서울신문, 2022.10.17.

5) “2036년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시민 지지 높아”, 이뉴스투데이, 2024.11.14.

6)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희 결과

- 결의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제2항7)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 사전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관광체육국을 소관하는 문화체육위원회는 사전협의와 업무지원에 대해 동의하였고,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소관하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사전협의에 대해서 동의함. 그 외 상임위원회 의견 제출 없음.

<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상임위원회 사전협의(안) >

□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명칭 :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대표발의자 : 송경택

□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관련 상임위원회	사전협의 (O/X)	업무지원 (O/X)	확인서명 (상임위원장)
균형발전본부 글로벌도시정책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O	X	
관광체육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O	O	

2024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담당 연락처	02-2180-7683
--------	--------------

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에도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